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25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0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박용갑 · 송옥주
이병진 · 박홍배 · 허성무
복기왕 · 안호영 · 서영교
위성곤 · 허영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자(이하 “기금관리주체”라 한다)는 안정성·유동성·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.

이와 관련,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1조에서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을 통하여 투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은 현행법에 따른 전체 법정기금 중 일부에 불과하며 기금 자산 중 10% 이내의 범위에 국한하고 있어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함. 더욱이, 법정기금의 여유자금만 1,400조 원 규모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경제를 이끌어 나갈 벤처·스타트업에 대

한 투자가 미진하여 법정기금이 벤처·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벤처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자산운용의 원칙을 세우고,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 또는 한국벤처투자에 통합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3조제2항 신설 등).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의 제목 중 “원칙”을 “원칙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금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의 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벤처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는 여유자금 운용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(이하 “한국벤처투자”라 한다)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8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금융기관으로”를 “금융기관 또는 한국벤처투자로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재무상태 및 경영지표의 건전성

2. 수익률 등 자산운용의 성과

3. 자산운용 전략 및 계획의 적정성

4. 그 밖에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벤처투자를 선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창업기업,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·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투자전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3조(기금자산운용의 <u>원칙</u>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	제63조(기금자산운용의 <u>원칙 등</u>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금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의 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벤처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는 여유자금 운용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(이하 “한국벤처투자”라 한다)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/u> ③·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
②·③ (생략)	
제81조(여유자금의 통합운용) 기획재정부장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	제81조(여유자금의 통합운용) ① ----- ----- ----- -----

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-----금융기관 또는 한국벤처
투자로-----

-----.
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재무상태 및 경영지표의 건
전성
2. 수익률 등 자산운용의 성과
3. 자산운용 전략 및 계획의 적
정성
4. 그 밖에 효율적인 자산운용
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벤처투자를 선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창업기업,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·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투자전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